

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3
----------	-----

제출자 : 평창군수

제출연월일 : 2000. 9.

1. 제안이유

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행정규제정비계획 확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조항과 상위 법률과의 중복규제 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여 보조금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보조금의 교부조건 조항은 상위법률과의 중복규제로 삭제
(현행 제7조)
- 나. 용도외 사용금지 조항은 상위법률과의 중복규제로 삭제
(현행 제11조)
- 다. 보조사업의 변경내용 조항은 상위법률과의 중복규제로 삭제
(현행 제12조)
- 라.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조항은 상위법률과의 중복규제로 삭제
(현행 제13조)
- 마. 보조사업의 신고사항중 "사업을 폐지하였을때"는 승인 사항임으로 삭제(현행 제16조 제2항)
- 바. 보조금을 교부받는자에 대한 제재를 할수 있는 조항중 "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때"와 "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때"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(현행 제1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상위법률과 중복대비표(붙임)

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(보조금의 교부조건) : 삭제

제11조(용도외 사용금지) : 삭제

제12조(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) : 삭제

제13조(보조사업 실적보고) : 삭제

제16조(보조사업의 신고)제2항 : 삭제

제17조(보조금을 교부받는자에 대한 제재)제2항 및 제4항 : 삭제

제17조(보조금을 교부받는자에 대한 제재)제3항중 "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리하였을 때"를 "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리로 인해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7조(보조금의 교부조건)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불일 수 있다.</p> <p>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불일 수 있다.</p>	<p>제 7조(보조금의 교부조건)</p> <p>① < 삭 제 ></p> <p>② < 삭 제 ></p>
<p>제11조(용도외 사용금지)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그 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	<p>제11조(용도외 사용금지) < 삭 제 ></p>
<p>제12조(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)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,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.</p>	<p>제12조(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)</p> <p>① < 삭 제 ></p> <p>② < 삭 제 ></p>
<p>제13조(보조사업의 실적보고)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는 자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에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보조사업 실적보고)</p> <p>① < 삭 제 ></p> <p>② < 삭 제 ></p>
<p>제16조(보조사업의 신고) < 생략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 생략 > 2.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. < 생략 > 4. < 생략 > 	<p>제16조(보조사업의 신고) < 현행과 같음 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 현행과 같음 > 2. < 삭 제 > 3. < 현행과 같음 > 4. < 현행과 같음 >

현 행	개 정
<p>제17조(보조금을 교부받는자에 대한 제재)</p> <p>< 생 략 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 생 략 > 2.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리하였을 때 4. 보조금의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5. < 생 략 > 6. < 생 략 > 	<p>제17조(보조금을 교부받는자에 대한 제재)</p> <p>< 현행과 같음 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 현행과 같음 > 2. < 삭 제 > 3.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리로 인해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4. < 삭 제 > 5. < 현행과 같음 > 6. < 현행과 같음 >

상위법률과 중복대비표

상위 법률 (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)	평창군 보조금관리 조례
<p>제18조(보조금의 교부조건)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볼일수 있다.</p> <p>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볼일 수 있다.</p>	<p>제 7조(보조금의 교부조건)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볼일 수 있다.</p> <p>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볼일 수 있다.</p>
<p>제22조(용도와 사용금지)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	<p>제11조(용도와 사용금지) 보조사업자는 법령,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그 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
<p>제23조(보조사업의 내용변경)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12조(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)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,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 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.</p>
<p>제27조(보조사업의 실적보고) 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,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보조사업 실적보고)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때는 자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